

2020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

기 존 : 3개 기관

- 서울특별시시장 비서실,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,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

변 경 : 시장 권한 대행 사무 포함

※ 관련 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(2020.10. 5, 공포시행)

기 존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

1. 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- 다.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라.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마.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
개 정 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

1. 운영위원회
 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 - 다.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③
 - 라.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마.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바.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